

청주지방법원 2016. 11. 17 선고 2016가단1061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0. 27.

판결 선고 2016. 11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전 650㎡의 지상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남동희

별지